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<b>웅지세무대학교</b> | <b>장 학 위 원 회 규 정</b> | 문서번호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제정일자   | 04.03.01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개정일자 | 22.08.30.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페이지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주 관 처  | 교학처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관리부서   | 학생지원실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홈페이지공개 | 공 개       |

**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**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위원은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~7명으로 구성한다. 단, 입학주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<개정 2015.04.01., 개정 2022.08.30.>

**제3조(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.

1. 장학제도에 대한 기본 계획의 심의 및 예산 확보 사항
2.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
3. ~~삭제 <2015.06.01.>~~
4. 장학금 및 장학인원의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시행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소집 및 회의)** 위원장은 본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교학처 학생팀 담당자로 한다.

**제7조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규정의 개정)

1. 제2조 "학생처장"을 "교학처장"으로 개정하다
2. 제6조 "학생처"를 "교학처 학생팀"으로 개정하다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규정의 개정)

1. 제3조(기능) 3. 장학에 관한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규정의 개정)

1. 제2조 입학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추가하다.